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사례: 호주를 중심으로

이향수¹, 이성훈^{2*}

¹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²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전공

A Study on Social Integration for Migrants: Focused on Australia

Hyangsoo Lee¹, Seong-Hoon Lee^{2*}

¹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onkuk University

²Dep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호주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 및 법무부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밝혀 냈다. 우선, 호주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른 이주민에 비해 더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주민 통합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호주 정부처럼 인도주의적 이주민에 대한 관심 및 배려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통합에의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호주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주로 호주이민국경보호부와 사회복지부에서 수립하지만 프로그램의 수행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며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의 권한은 좀 더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마다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이주민, 사회통합, 호주, 이민정책 법체계, 사회통합 추진체계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migrants in Australia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 To do this, we first analyzed the literature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Australia and the Ministry of Justice report. Based on this, I have found ou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First, the Australian government's social integration program emphasizes participation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s for humanitarian migrants, who need more help than other migrants. In Korea, the humanitarian integration program for migrants is very po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aise interest in active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through interest and consideration of humanitarian migrants like the Australian government. Second, the Australian government'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nd programs are mainly established by the Australian Immigration Border Protection Department and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but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is mainly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and emphasizes their role. In our case, we should give more authority to the local government 's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make them operate various programs according to local characteristics.

Key Words : Immigration, Social integration, Australia, Immigration policy, Social integration promotion system

*This article is financially supported by 2018 College of Public Policy at Kore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Seong-Hoon Lee(leeseonghoon@korea.ac.kr)

Received February 20, 2018

Revised March 29, 2018

Accepted May 20, 2018

Published May 28, 2018

1. 서론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사회구성원들 사이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한 문제들이 구성원들 간 다양한 배경과 차이에서 오는 경우에는 그로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곤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계층 간, 지역 간 우리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통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구나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들과 원주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통합의 이슈들은 향후 인구감소 및 노동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울러 우리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된 지 오래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호주정부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에 있어 여타 선진국보다도 선제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였다[1].

이하에서는 먼저 호주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고, 호주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호주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호주가 이민자 사회통합 사례 분석을 하고자 한다. 호주의 경우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의 역사가 우리나라 보다 길뿐 아니라, 일찍이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관심을 많이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내용은 우선 호주의 사회통합정책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호주의 이주와 통합에 대한 법체계를 살펴볼게 될 것이다. 둘째, 호주의 사회통합정책을 추진체계에 대해서 분석하여, 이주민 통합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나 집행기관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분석함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셋째,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부분에서는 호주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분석을 위해서 문헌연구, 해외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였다. 문헌연구는 호주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법제도에 대한 기존의 문헌과 호주 정책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법무부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호주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등에 대한 시사점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이주민통합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3. 호주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사례분석

3.1 호주의 이주민 현황 및 개관

호주의 인구는 2015년 현재 약 2,396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9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가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이민자 비율이 높았으며, 2010년 이후 인구성장의 주된 원인으로 이민을 꼽을 수 있다[2].

호주인구의 절반정도가 이민자로 호주의 이민자 비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다[3]. 호주는 그동안의 백호주의 정책을 완화하여, 호주로 이민 오는 인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4]. 호주의 이민사는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901년에서 제2차 대전 직후의 기간으로 철저한 백호정책에 기반 하여 앵글로-켈틱과 북유럽인만을 받아들였기 시기이다. 제2기는 제2차 대전 종전 직후에 시작되는데 종전과 함께 호주는 두 가지 사실에 직면했다. 첫째, 군사적 안보를 동맹국들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호주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다는 취약성을 깨닫게 되었다. 둘째,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자연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큰 규모의 국내시장과 노동력이 요구되었다. 호주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이민에 의한 인구증가를 모색해야 하지만, 영국이 주민에 대한 전통적인 선호정책으로는 필요한 수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데에 있었다. 제3기는 반세기 동안 유지되었던 백호주의(White Australia) 이민정책에서 비차별적, 개방적 이민정책으로의 전환 시기이다. 백호정책은 인종적으로 순수한 백인국가를 이루려는 비전에서 유색인을 범죄자, 정신이상자, 전염병환자, 성매매자 등과 함께 바람직하지 않은 이주민으로 분류하고 유색인의 호주 이민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던 정책이다[4]. 1966년에 호주

정부는 비유럽인에 대한 이민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차후에는 정착민으로서의 적격성, 사회통합능력, 기술 등에 근거해 이민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에서 백호주의가 완화된 이유는 호주경제가 1960년대 후 호황시기로 접어들면서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유대를 맺게 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 원활한 무역교류를 위해서 백호주의를 고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해 졌다는 것이다. 2010년 5월 ‘독립기술 이민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호주에 정착할 수 있었던 약 400여 종의직업군을 절반으로 축소하였다. 그 결과 기술 이민의 초점을 공급의 무조건적 수용에서 수요 대응적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3.2 호주 이민정책 법체계

3.2.1 이민제한법(1901)

1901년에 제정된 이민제한법은 백호주의에 대한 공식 선포로 간주되는데 비유럽인, 특히 중국 등 아시아인들의 이민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는 1850년대부터 시작된 호주의 골드러시 때문이다. 즉, 당시 호주의 금광개발과 맞물려 호주에서 골드러시가 이뤄지면서 많은 아시아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이 호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백인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백인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888년에는 중국출신의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호주정부가 취하게 되면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이민정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민제한법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제한법에 의해서 당시 호주로 유입되는 이주민들은 말하거나 듣기뿐 아니라 받아쓰기 시험을 통해 아시아계통의 이주민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기에 이르렀다 [5].

3.2.2 이민법(1958)

아시아계열 국가 출신 이주민의 유입의 제한을 초점을 두었던 백호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여타 국가들처럼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고 나서 수정되기에 이른다. 1958년에 제정된 호주 이민법(Migration Act)은 국경관리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민재심 심판소와 연방법원의 재심 등 국경 및 체류관리와 관련된 내용 등 이민행정과 이민자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부속규정인 이민법 시행

령/이민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은 비자발급과 관련된 체류자격과 신청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한경우 외, 2012). 호주의민법 제1부 총칙은 동 법률에 사용된 용어 정의, 사증 종류, 외국인 송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체류외국인에 관한 내용을 규정되고 있으며, 이민업무를 담당·대행하는 이민행정사에 관한 사항은 제3부에 규정되어 있다. 제4부는 이민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들로 구성되어 있고, 제5부부터 제8부에서는 행정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행정특별법원의 설치, 행정소송 및 사법구제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6].

3.2.3 인종차별법(1975)

호주 정부는 1975년 인종차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동 법률제정이전의 백호주의 정책 및 이민제한 등 이민정책에 대한 방향을 다소 변화시키고 있다. 호주의 인종차별법은 인종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종혐오에 근거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인종이나 피부색 등 공적영역에서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는 구별이나 차별, 제한, 선호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하고 있다.

3.2.4 이주개혁법(1992)

이주개혁법에서는 선택적 이민을 원칙으로 국가의 사회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민정책이 이주민의 확대를 통한 노동력의 확보중심에서 점점 선별적인 전문직종으로의 이민자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왔다.

3.2.5 호주시민권법(2007)

호주는 “연방귀화법”을 통하여 이주민들을 관리하여 왔으며, 동법에서는 귀화한 모든 거주자는 연방에서도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아시아, 아프리카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태평양 군도에서 온 이주민은 귀화를 신청할 수 없다[6, 7]. 호주시민권법은 이주민들의 국적 및 시민권 취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2007년 “호주시민권법”이 제정되는 동안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호주에 총 4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했을 때 주어진다. 4년 중 1년 이상은 영주권을 받은 상태여야 하며, 15세 미만의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동반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시험을 보기 위해 학습을 해야하는데 책

자(‘호주 시민권- 우리의 공동 결속력 Australian Citizenship : Our Common Bond.’) 뿐 아니라 영상자료DVD로도 학습이 가능하다. 시민권 시험은 총 20문제로서 객관식으로 구성된다. 시민권시험 합격률은 2015년 현재 합격률은 약98.7%로서 합격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호주이민국경보호부의 지원을 받아 메트로 이민자 정착센터(Metro Migrant Resource Centre)에서는 호주 시민권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총 학습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씩 6주에 걸쳐 진행되며, 시민권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이민국경보호부에서 시민권을 발급하게 된다[8].

3.3 호주의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3.3.1 이민국경보호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호주에서는 이민부가 1945년 신설되어 이민정책을 총괄하였다. 이후 이민부는 여러 차례 이름을 변경하여왔으며, 기능 역시 조정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민부는 2006년 이민다문화 및 토착문화부(DIMIA)라는 이름에서 이민시민권부(DIC)로 변경하기에 이른다. 2007년 이민시민권부(DIAC)로 변경되었으며 최근 2013년에는 이민국경보호부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이후 이민부의 명칭은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2013년 이민시민권부(DIAC)와 호주세관국경보호국(ACBPS)이 하나로 통합되어 이민국경보호부로 변경되었다. 이민국경보호부는 호주 국경 수비대를 두고 있으며, 출입국관리 및 난민보호 등 인도주의적 이민정책을 그 기본 미션으로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호주시민권법의 성실한 집행의지 역시 보여줌으로서 이주민들의 시민권취득에 엄격한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 이민국경보호부의 주요 담당분야는 이민, 시민권 부여, 국경관리 등이다. 우선 이민프로그램은 인도주의 이민과 비인도주의 이민으로 구분된다. 인도주의 이민은 난민과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보호와 해외 재정착이민으로 나뉘게 된다. 비인도주의 이민은 기술이민, 가족이민, 특별비자이민으로 구분된다. 2015년 현재 이민의 형태는 기술이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가족이민, 인도주의적 이민 순이다[9].

2016년 현재 이민국경보호부의 본청은 캔버라에 위치

해 있으며,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주 등 6개의 주정부 및 노던테리토리 등에 위치한 지역사무소는 총 14개의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다 (<http://www.border.gov.au/>). 전체 직원은 본부를 포함 14개의 지방사무소와 해외주재관 등에 파견되어 있는 인원을 포함하여 2016년 현재 약 8,700여명에 이른다.

호주이민국경보호부의 사회통합정책은 보통 입국후 5년간 정착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로 인도주의적 이민자와 가족이민을 통해 입국한 이민자 중 영어능력이 낮은 이민자를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영어교육과 통역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난민의 경우 정부는 주거와 트라우마 상담을 추가지원하는 등 호주사회의 통합을 적절히 시행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원칙적으로 가족이민자들을 위한 별도의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영주권을 부여받은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들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기 때문에 특별한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며, 취업에 제한이 없고 영주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영어구사능력을 검증하기 때문에 별도의 영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민국경보호부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을 기획하고 자금지원을 하며 실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수행은 각 지역별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형태를 띤다. 예를 들어 이민국경보호부의 대표적 사회통합프로그램인 AMEP(Adult Migrant English Program)은 이주민 중 어학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인데 프로그램 제공기관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여 영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성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정부나 지방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민국경보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다양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경우 그 대상이 호주에 이주한 모든 이주민들이며, 특히 인도주의적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이민국경보호부 본청은 부사무차관(Deputy Secretary)을 책임자로 삼는 5개의 국(Group Comprises), 19개의 부서/특별 분과(Divisions and specialist units)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국은 정책, 프로그램 관리국, 고객센터국, 사업서비스국, 포트폴리오 조정혁신부, 이민지원 의결국 등으로 나뉘어 있다. 또한 5개 국외에도 이민국경보

호부 기구로서 독립보호평가부와 특별위원회가 있다. 아울러 이민국경보호부 소속이지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이민자등록사무소도 있다[9].

2013년 부처의 업무조정 이후 신설된 이민국경보호부는 조정에 이민부에서 담당하던 업무 가운데 일부는 다른 부처로 이관하였다. 즉, 정착이나 다문화관련된 업무 등은 사회서비스부로 이관되었고, 성인이민자 영어프로그램은 산업부로 이관되었다[9]. 사회복지부(DSS)로 이관된 정착 및 다문화업무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인도주의적 정착 서비스, 정착지원금 사업, 복합사례지원, 다양성 및 사회통합사업, 다문화 예술 및 축제 보조금, 다문화 공동체 건설사업 등이 있다. 이민자들이 직장을 찾는데 필요한 영어기술을 습득시키고자 마련된 성인이민자 영어 프로그램은 기술·직업교육정책을 관리하는 산업부로 이관되었다[10-12]. 이러한 업무조정을 통해 이민국경보호부는 비호주시민의 출입국 및 체류, 국경 이주 통제, 시민권, 민족문제, 관세 및 검문·검색을 제외한 국경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5].

3.3.2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

사회복지부는 수도 캔버라에 위치해있으며, 사회통합 등 이민자 지원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법무부, 2015: 51. 재구성).

사회복지부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는 인도주의적 정착서비스, 호주 문화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복합사례지원 서비스, 정착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3].

3.3.3 호주국경수비대

(Australian Border Force: ABF)

호주이민국경보호부가 국경보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면, 호주국경수비대는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14]. 호주국경수비대는 국경보호 및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주로 국경관리, 조사, 규정준수, 보호 및 집행기능을 한다[15]. 호주국경수비대는 2015년 신설되었는데, 국경안보는 국경을 넘는 인적, 물적 자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호주에서 최근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국경관리의 필요성이 증가에 대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http://me2.do/xOBWWLZ>).

4. 호주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시사점

4.1 인도주의적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의 참여 의무화 강조

호주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그 대상이 호주에 이주한 모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도움이 다른 이주민대상에 비해 더욱더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5년간 호주사회에 잘 적응하여 사회통합과정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6]. 호주 이민국경보호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인도주의적 사유로 입국한 이주민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사유로 입국한 이민자에 대한 영어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도주의적 입국자인 난민의 경우 호주정부에서는 주거와 트라우마 상담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족이민을 통해 입국한 이민자 중에서도 일부 영어실력이 부족한 대상을 찾아 이들에 대한 영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가족초청에 의한 가족이민자들의 경우 시민권자들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기 때문에 별도의 사회통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필요는 없다. 가족이민자들은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에 제한이 없으며 영주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영어능력을 검증받기 때문에 별도의 영어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17].

호주 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들은 대상별로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그들의 호주사회에의 안정적인 적응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난민이나 인도주의적 이유에서 입국한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CCS(복합사례지원)와 같은 인도주의적 사회통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4.2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

호주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주로 호주 이민국경보호부와 사회복지부에서 수립하지만 프로그램의 수행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며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의 공식적인 프로그램 외에 지방정부 마다의 다양한 다문화교육, 종교, 스포츠 등

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프로그램들은 연방법이 아니라 주정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18].

특히 언어교육은 성인들의 경우 지역 커뮤니티센터와 직장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의 자녀들의 경우 입학 전부터 일정한 언어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Living in Harmony(조화롭게 살기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 내 거주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다문화커뮤니티간의 화합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서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매년 3월 21일을 Harmony Day로 지정하여 지역별로 이주민과 일반 시민들 간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즉, 모든 호주인들이 인종적, 문화적 차별 없이 도구를 같은 호주인으로서 인식하게 하고 공정하게 대하며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한 Living in Harmony 프로그램은 지역 내 거주민들 간의 화합 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타인종, 타민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을 위해 학교교육의 방향이 인종주의나 타 인종에 대한 편견을 줄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일반 호주원주민들의 경우 이주민들도 호주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인식개선을 목표로 한다 [19].

4.3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언어교육의 강조

이민국경보호부는 매우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언어교육이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AMEP은 이주민들을 위한 성인영어교육프로그램으로서 비용은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이민자 및 인도주의 입국자들에게 무료 영어학습을 최대 510시간까지 제공하고 있다. AMEP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들의 영어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며, 호주의 문화 및 관습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된다. 또한 이민국경보호부의 통번역서비스인 TIS프로그램이나 교육고용직장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에서 시행하는 LLNP(Language, Literacy and Numeracy Program), WELL(Workplace English Language and Literacy), ESL-NA(English as a Secondary language for New Arrivals) 등 매우 다양하며 언어교육은 무료로 제공된다 [20]. 아울러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사회통합프로

그램은 언어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의무참여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4. 결론

호주는 비교적 이민 역사도 길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의 역사가 우리나라 보다 길다. 또한 사회통합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많이 인용되어온 나라라 중 하나이다. 또한 호주의 태동 자체가 이민자들의 개척을 통해 나라의 번영을 가져온 나라로서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역사도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호주의 경우에도 생산 인력 감소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교육정책인 측면이 없지는 않다[21]. 그러나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정책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견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사례대상을 호주로 정하게 되었다[21].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한 연구 분석과 법무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호주의 사회통합정책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정책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우선, 호주 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들은 대상별로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그들의 호주사회에의 안정적인 적응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난민이나 인도주의적 이유에서 입국한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CCS(복합사례지원)와 같은 인도주의적 사회통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도주의적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하며, 관심의 정도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호주 정부처럼 인도주의적 이주민에 대한 관심 및 배려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통합에의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우리나라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추진부처는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이 주요 부처인데, 이들 부처 간 정보나 운영하고 있는 각종 다양한 사회통합이나 이민정책 관련 프로그램의 공유 또는 정책공조가 매우 약한 편이다. 따라서 때로는 유사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수행하는 등 낭비적 요소가 발견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충하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기도 한다[21].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중앙부처 수준의 분화된 콘트를 기관은 많

으나 실제 현장에서 이주민 통합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축소되어 있다는 점이다. 호주의 경우 주요 사회통합 정책은 호주이민국경보호부와 사회복지부에서 수립하지만 프로그램의 수행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며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의 공식적인 프로그램 외에 지방정부 마다의 다양한 다문화교육, 종교, 스포츠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프로그램들은 연방법이 아니라 주 정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의 권한은 좀 더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마다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호주사례를 분석하여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질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양적 접근 방법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서베이 해보고 아울러, 그들의 의견 역시 청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주 외에 다른 국가들을 좀더 다면적으로 살펴서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 분석하는 연구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밝혀내는 후속 연구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REFERENCES

- [1] <https://prezi.com/8yuhab1vn8wg/presentation>
- [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uzzrag&logNo=220262232584&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 [3]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704000041>
- [4] K. Y. Lee & Y. M. Kim. (2010). Australia's multiculturalism policy and immigration rights. *International Political Review*, 50(1), 445-467.
- [5] B. G. Moon, H. M. Ra & S. J. Han. (2015). *Comprehensive Diagnosis and Improvement Plan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y*.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and Foreign Policy Headquarters.
- [6] U. G. Bong. (2011). *Comparative Study on Immigrati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Dong-A University Graduate School.
- [7] K. G. Han, D. H. Seol, C. W. Lee, C. H. Lee, H. K. Lee, G. S. Jung & G. S. Han. (2012). *Study on Immigration Policy Promotion System in Overseas Countries*.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and Foreign Policy Headquarters.
- [8] <http://www.koreanwelfare.org.au/-apply-for-australian-citizenship>
- [9]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Chungcheongnam-do. (2015). *A Study on the Rol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y*.
- [10] C. S. Shin & S. W. Kim. (2015). *Mental Health Reform through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in Australia and Convergence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6), 341-350. DOI : 10.14400/JDC.2015.13.6.341
- [11] Y. S. Kim. (2014).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1), 575-583. DOI : 10.14400/JDC.2014.12.11.575
- [12] H. J. Lee. (2014). Exploratory Study on Experience in Cultural Competence of Multicultural Counselors Working with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2), 519-530. DOI : 10.14400/JDC.2014.12.2.519
- [13] B. J. Jeon. (2014). A Study on National Identity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4), 33-41. DOI : 10.14400/JDC.2014.12.4.33
- [14] J. A. Lee. (2015).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Civic Multiculturalism Policy of Canad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1), 15-23. DOI : 10.14400/JDC.2015.13.11.15
- [15] Y. A. Jung & H. S. Kim. (2014). A Method of Using Digital Map to Improve Multicultural Education Efficiency: A Design of 'e-Atlas of Society and Culture'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to Overcome Contextual Limit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1), 13-21. DOI : 10.14400/JDC.2014.12.11.13
- [16] K. S. Noh, J. Y. Lee & S. T. Park. (2016). A Study on the Development Multicultural Family Business Mod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3), 199-207. DOI : 10.14400/JDC.2016.14.3.199
- [17] S. W. Byun, S. H. Kim & S. H. Park. (2017).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EduTech for Multicultural Peopl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3), 55-62.

DOI : 10.14400/JDC.2016.14.3.55

- [18] S. H. Park & J. Y. Yu. (2017).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Experience on Empathy in Adolescents :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ultural Empath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499-510. DOI : /10.14400/JDC.2017.15.4.499
- [19] S. J. Han. (2017). Study on Effec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Awareness of Unification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0), 1-7. DOI :10.14400/JDC.2017.15.10.1
- [20] N. Y. Goo & O. S. Lee. (2018). Influence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istance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187-195. DOI : 10.14400/JDC.2018.16.1.187
- [21] H. S. Lee & S. H. Lee. (2017). A study on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based on case in Fr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95-100. DOI : 10.14400/JDC.2017.15.12.95

이 향 수(Lee, Hyang Soo)

[중신회원]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 199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
- 200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정책평가, 성과관리, 지식관리, 정보화정책, 이민정책
- E-Mail : yun7ju7@kku.ac.kr

이 성 훈(Lee, Seong Hoon)

[중신회원]



- 1990년 2월 :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문학사)
- 1993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 2002년 9월 :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경제학 박사)
- 2011년 3월 ~ 2016년 2월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지식자본, 생산성, 산업조직
- E-Mail : leeseonghoon@korea.ac.kr